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8
----------	------

2025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박춘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춘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골자

- 1)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2)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정원사 통합 관리, 경비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제2조는 ‘시민정원사’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는 시장이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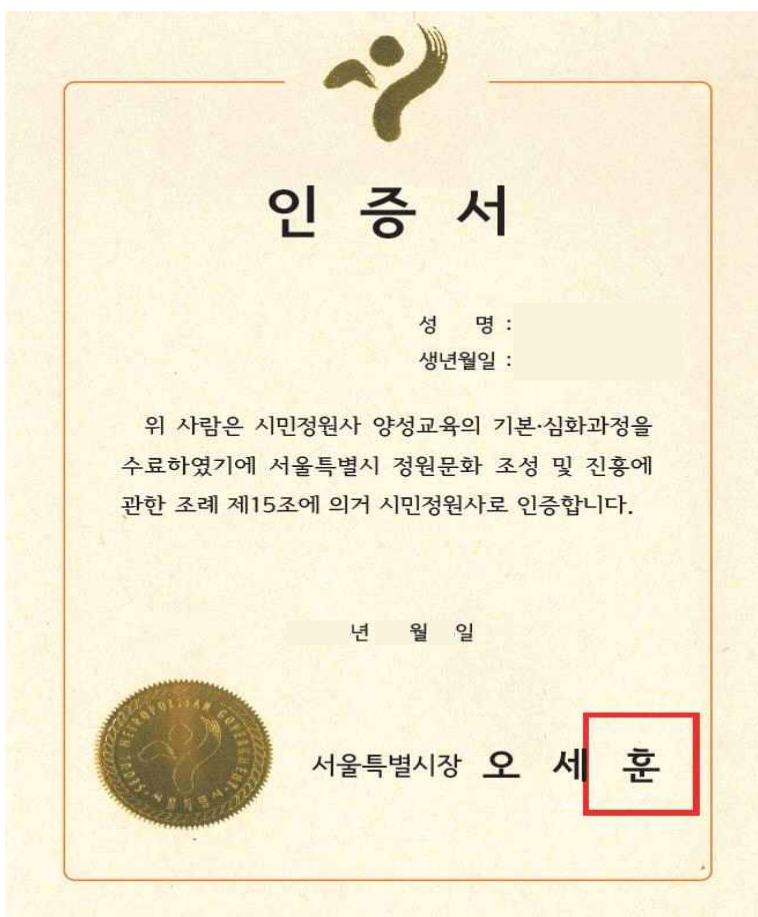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자(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를 배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음.

- 시민정원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준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반면, 정원문화 활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정원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고 있는 점과 지금까지 배출된 시민정원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시민정원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경비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현 시민정원사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2항제4호는 ‘정원진흥실시계획’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을 명시한 것이며, 나머지 조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양식(2024)>



- 1)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원관련”을 “정원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원관련”을 “정원 관련”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생략)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u>정원관련</u>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8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생략)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 <u>정원 관련</u> ----- ----- ----- -----. ② <u>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③ <u>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제18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 4. (생 략)

③ (생 략)

제2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

1. ----- 정원 관련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표창) ① -----

----- 표창 -----

-----.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 시민정원사 사업 관련 참고 자료로 2025년 5분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업설명서를 제시함(붙임1)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붙임 1] 2025년 5분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업설명서

□ 사업목적

- 시민 스스로 생활공간(집, 학교, 직장 등) 곳곳에 꽃, 나무 심기 등 정원문화 확산 및 건강한 녹색 사회 구축
- 양질의 녹색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원분야 전문가 양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7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12.
- 대 상 지 : 아파트, 상가, 동네, 골목, 학교 등 서울시 내 전역
- 사 업 비 : 238,6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시민정원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녹색교육 추진
 - 기업의 사회공헌 녹화활동 추진
 - 대시민 소통을 위한 도시녹화 운동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등

□ 추진경위

- 2013. ~ 2022.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
 - 시민 등 1,134,204명과 함께 1,645만주 식재
 - 녹색교육 4,707명 수료 및 시민정원사 687명 배출, 역량교육 개설·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2023. ~ 2024. : 서울, 초록 물들이기 프로젝트 추진
 -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을 위한 시상식 개최(조경상, 푸른도시상 등) 등
 - 시민정원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녹색교육 추진
 - 기업의 사회공헌 녹화활동 추진
 - 대시민 소통을 위한 도시녹화 운동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등